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의무자의 부담은 감소
-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으로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 6천 톤**을 회수하여 약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부담금 면제(205억 원) > 재활용 의무 추가 이행비용(154억 원) → 연간 51억 원 경감

**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되어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저공해운행지역 :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며 저공해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지역

붙임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전자제품등자원 순환법) (수도법)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배정한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황원재	(044-201-7399)
(대기관리권역법)	환경부 수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최진성	(044-201-7121)
(대기관리권역법)	환경부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담당자	사무관	김소정	(044-201-6929)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현재 50종(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으로 확대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분 비용 부과 대신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도록 정책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수입업자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부담금 면제(205억 원) > 재활용 의무 추가 이행비용(154억 원) → 연간 51억 원 경감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연간 7만 6천 톤 이상 순환이용 	'26년 1월 1일	이차전지순환이용 지원단 배정한 과장(7417) 황원재 사무관(7399)
2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규정 수도사업 통합 추진 시 수도 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별 분산된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재무개선, 조직 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및 전문인력 확보 기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및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력 확보 	'25년 4월 23일 (상위법 시행일)	수도기획과 이승현 과장(7110) 최진성 사무관(7121)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 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 규정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1일 1회 10만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 운행 제한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1일 1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 최소화 	2025년 4월 23일	교통환경과 전원혁 과장(6920) 김소정 사무관(6929)